|  |  |  |
| --- | --- | --- |
| **세수징수관리방식 개혁시행범위 확대에 관한 공고**해관총서공고2016년제73호세수징수관리방식 개혁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해관총서는 세금징수관리방식 개혁시행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한다. 이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확대 시행되는 범위는 장강경제권 해관(상해, 남경, 항주, 영파, 합비, 남창, 무한, 장사, 중경, 성도, 귀양, 곤명 해관을 포함함. 이하 동일) 관할구역 해운항구에서 수입하여, 장강경제권 해관에 전자방식으로 신고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 제84, 85, 90장의 상품이다.공식 가격산정, 특별 사안 및 전자네트워킹이 구축되지 않은 우대무역협정하의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성명서와 관련되는 경우, 이는 시행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기타 사항은 해관총서 2016년 제62호 공고에 따라 집행한다.본 공고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를 특별히 공고한다.해관총서2016년11월30일 |  | **关于扩大税收征管方式改革试点范围的公告**海关总署公告2016年第73号为加快推进税收征管方式改革，海关总署决定扩大税收征管方式改革试点范围。现将有关事项公告如下：　　扩大试点的范围是，在长江经济带海关（包括上海、南京、杭州、宁波、合肥、南昌、武汉、长沙、重庆、成都、贵阳、昆明海关，下同）关区海运口岸进口，且向长江经济带海关以无纸化方式申报的《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税则》第84、85、90章商品。　　涉及公式定价、特案以及尚未实现电子联网的优惠贸易协定项下原产地证书或者原产地声明的，不纳入试点范围。　　其他事项按照海关总署2016年第62号公告执行。　　本公告自2016年12月1日起施行。特此公告。　　海关总署　　2016年11月30日　　　 　　 |